

“운산 前 총무원장 72억원 사고쳤다”

사정바꿨더니 종단 어지럽혀 “아직도 반성 없다” 성토

태고종 초심원(원장 효성)이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멸빈한 것에 대해 현 태고종 집행부와 운산 스님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 호법원장 인공 스님 등은 8월 2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공·영우·인공 스님은 태고종 중앙총무기관을 대표하는 3원장으로 현 집행부의 운산 스님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집적해 한다.

태고종은 “운산 스님은 30여 년 몸 담았던 종단에서 자신의 실리 쟁기에 급급했다”며 “천중사를 차리고 재단법인을 가져갔다. 또 일본 급강사 주지 행세를 하는 것을 비롯해 종단 납골당 사업 관계자를 통해 카드승인회사 회장에 취임해 관공비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태고종 집행부 스님들은 “운산 前 총무원장은 합법적·정당한 절차 없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종단부채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멸빈 징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운산 스님은 퇴임 후에도 막대한 종단 재산이 출연된 동방대학원대학교 마저 탈종단에 사유화하려는 해종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고종 집행부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산 前 총무원장의 잘못을 ①종단부채 문제 ②종단 공금 유용건 ③동방대학원대학 문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종단 부채는 운산 스님으로 인해 발생한 화광씨엔씨 대표 신경순 15억원 대출건과 천중사 7억원 대출건, 봉원사 46억원 대출건, 봉원사 납골당 하청업자인 미래불 김규배 대표의 채무보증건, 논산노인복지병원 건립 명목으로 대출된 15억원 등이다.

운산 前 총무원장의 3대 잘못

72억원의 부채 발생시키고

8억원은 개인이 유용하기도

동방대학원대는 사유화 시도

이에 태고종 연석회의서는

“운산 스님은 천중사 내놓고

학교 이사장직도 내놔라”

태고종이 주장하는 운산 스님의 종단 공금 유용 규모는 8억원이다.

인공 스님 등은 “운산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시 종단 공금 7억3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이 책임자로 있는 사회복지법인(논산 노인요양병원)에 대여해 줬고, 4000만원은 본인 이의대로 사용하는 등 8억원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말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운산 스님이 이사장직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상욱 총장 내사건도 현 집행부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고종은 “운산 스님이 천중사 토지 보상금 13억원을 혼자 처리하고 재단법인 사찰인 울산 욕망사 재산처분대금 2억원을 갖다 쓰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원의 종단 공금이 투자된 동방대학원대학교까지 챙기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멸빈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운산 前 총무원장에 대한 징계는 종정예하의 뜻에 따라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총회와 원로회의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은 다수의 종도가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운산 스님을 압박했다.

태고종은 8월 26일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 호법원장 인공 스님 등 삼원장을 비롯해 승정원, 원로의원, 중앙총회의원,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이 한국불교진흥관에서 종단 현안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단을 이끌어 가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간부로서 불조(佛祖)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단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심기일전 하자.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종도 모두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종단 질서를 바로 잡자”고 다짐했다.

스님은 “태고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비구·대처 분쟁 과정에서 기성사찰을 다 빼앗기고 사설 단에 양도할 것 >운산 스님은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1년 말미뒀더니 탄핵시도” 50년 지기, 인공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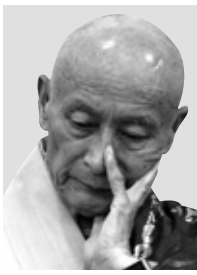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8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운산 스님은 이완용과 똑같은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스님은 “운산 스님과 50여 년 지기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질게 대할 수 없어 1년 동안 운산 스님에게 기회를 줬지만 운산 스님은 이를 역이용해 총무원장 탄핵을 시도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운산 스님이 자신과의 인연을 악용해 1년 동안 각

서만 네 번 쓰며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운산 스님으로 인한 부채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72억원(이자 포함)이다. 종단 장부에도 올라있지 않은 이것을 종단이 왜 갚아야 하느냐”며 “종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답답하다. 천중사를 매각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천중사를 종단에 넘기겠다는 것도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절차없이 발생한 부채는 해종행위”

30년 지기, 영우 스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채는 해종행위이다. 종단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 집행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운산 前 총무원장과 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은 30년 지기이다.

영우 스님은 8월 23일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운산 스님과 지인으로 지냈다. 개인적으로는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지만 종단이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태고종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비구·대처 분쟁 과정에서 기성사찰을 다 빼앗기고 사설 단에 양도할 것 >운산 스님은 동방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태고종이 바로 서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운산 스님이다”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종단이 문제 삼는 부분은 모두 운산 스님의 독주에서 야기된 것들”이라며 “동방대학원대학 문제까지도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사유화하려는 운산 스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우 스님은 “운산 스님은 지금도 자신이 총무원장에 준하는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성호 스님의 멸빈·제적은 ‘무효’

종단 처분 사회법서 제동...종헌·종법 재개정 불가피

조계종 총무원장을 사회법에 제소해 멸빈·제적된 성호 스님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8월 23일 성호 스님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성호 스님은 2010년 9월 20일 조계종 호계원을 멸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총무원이 2월 11일 자신을 제적하자 추가로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성호 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의 일부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한 호법부 호계원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성호 스님이 청구한 멸빈·제적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에 앞선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호 스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는 5월 19일 성호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제적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호 스님에 대한 제적 징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일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총무원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성호 스님에 대한 8개항의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비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호 스님이 법원에 총무원장 당선무효소환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본안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권징계가 아닌 제적의 처분을 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총무원장에 대한 사회법 제소뿐만 아니라 호법부

총무원에 대한 사회법 제소, 재산비위, 총무원정 거부·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에 회부했다.

2010년 4월과 10월 각각 초심호계원과 재심호계원이 멸빈을 판결·확정된 바 있다.

성호 스님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으로 호제들이자, 호법부정은 제적으로 호계원에 특별제임을 회부해 1월 19일 제적시켰다. 이에 불복한 성호 스님은 다시 2번째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이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조동섭 기자

법일 스님의 구족계 삭제는 ‘무효’

은해사는 총회의원선거 10월경 다시 치루기로

조계종 총무원이 법일 스님(前대장사 주지)의 승적부에서 구족계를 삭제한 것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범등)은 8월 19일 제66차 심판부를 열고 “(구족계를 삭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구족계 수치 여부와 조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며 구족계 삭제조치는 무효를 수지했는지 여부와 조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족계 삭제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총무원장이 전결로 승적을 정정한 것은 종법위반·직권남용으로 징계해야한다”는 초심호계원의 판결은 각하했다.

이와 함께, 법일 스님이 속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의 중

앙총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23일 제242차 회의를 열어 은해사 중앙총회의원 재선거를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선관위는 “제10교구선관위의 재선거 실시요청과 법규위원회의 협조요청, 연기가간 중 선거인민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법의 재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은해사 중앙총회의원 선거는 10월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정수 스님에 대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심호계원으로부터 승적을 되찾은 법일 스님이 제10교구 은해사 중앙총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동섭 기자

교육원, 승가교육진흥재단 설립해 장학제도 UP

2012년 장학금은 연구 취약 분야 우선 선발키로

(가칭)승가교육진흥재단 설립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은 ‘2012년 종단 장학금 사업 계획’을 토대로 8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

중장기 계획 내부 논의 중

연구 취약 분야 우선 지원

원은 그동안 승가교육진흥기금에서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장학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면 불자들이 재단 기부를 통해 장학금을 확충할 수 있고, 장학 제도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장 법안 스님은 “재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11월 제5차 장학위원회에서도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장은 시기상조이고 준비를 통해 추후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또 내년도 장학 제도를 연구 취약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과 면접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개편한다고 밝혔

“멸빈 억울... 전임 예우 지켜 달라”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

“평생을 종도로서 모범 보이고자 살아온 나를 종단이 음해하고 있다. 종단은 원로·전임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고 있다.”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고종 초심원의 멸빈 판결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중앙총회의장 영우 스님 등이 자신을 성토했다는 것과 관련해 항변했다.

운산 스님은 “이번 일을 겪으며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입을 열었다.

스님은 “한국불교진흥관을 짓고 전국을 순회하며 종단을 개혁하고자 진력했지만 중도하차해야 했다”며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종단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원력이 있지만...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운산 스님은 자신의 비위로 지목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종단 외부로 유출돼 언급되는 것은 종단의 앞날에 비취볼 때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 종단과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운산이 사심을 갖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운산 스님은 종단 측이 주장하는 72억원의 미해결 부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논산 노인요양병원 대출건(17억원)은 태고종 승가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스님은 “병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을 매각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봉원사 연지원의 15억원 대출건은 “봉원사 주지스님의 이해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종단이 아닌 봉원사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해명

했다.

천중사 증개축과 관련된 7억원의 대출은 “종단 명의의 부채이나 종단 부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산 스님은 “후임자가 전임자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갚아주는 것은 관행이었다. 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관행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억원 상당의 미래불 채무보증건과 태고중앙복지재단 담보로 대출된 15억원에 대해 스님은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조용히 넘어가려 한 것이 문제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운산 스님은 “종단에 처음 들어와 일할 때만해도 총무원들 월급 줄 돈도 없이 빚만 1억원이었다”며 “재정구조를 바꾸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동방대학원대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총무원 측 주장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운산 스님은 “영우 스님은 인공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뀌어제는 (인공 총무원장이 아닌)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운산 스님은 “자신과 관련해 빚어진 금전 문제는 후임자인 인공 총무원장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총무원장 재직 당시 소송 등을 통해 취득한 채무권을 인공 총무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종단에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조동섭 기자

서는 유형·무형 문화재 관련 전공을 우선한다.

이는 그동안 스님들의 연구가 일부 분야에 치중돼 있고 각 분야의 고문 발전이 필요하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광 스님은 “불교사의 경우 신라와 고려시대 연구는 많은데,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장학금 선발에서 종단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 및 전공자 수가 취약한 분야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장학금 선발은 24일 공고를 시작으로 9월 15일~10월 28일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서류 심사 우선 선발한다. 응용불교에서는 불교윤리학(생명·생태), 불교 사회학, 사회복지정책 등을, 불교문화에

박기범 기자

법을 제정해 사설사문 문제를 해결하고 종단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사찰법 제정안’ 중 예비등록제도 하나 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비등록제는 조계종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장건할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 총무부에 사전에 예비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라북도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찰이 장건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직할 사찰인 적석사 주지 선암 스님도 현재 사설사문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공청회에 대해 특위 위원장 법안 스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안 스님은 “전체적으로 스님들이 큰 틀에서는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것 같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시 논의해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안정성 갖춘 법안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하나 공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법안을 제정하면서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은 ‘사찰법 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며 자칫 사찰 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스님은 또 “장건주 사자상승은 중한 위태다. 내가 석불사 장건주지만 상좌에게 무조건 장건주 지위를 줄 수 없다. 30년 이상 석불사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난 석불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5대 결사 중 평화결사를 깨는 법규가 될 것이다”며 사자상승이 제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륜 스님은 “일물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구니 스님들은 어디에서 살라는 말인가? 공찰 중 비구니 스님들이 주지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 이상 사찰법 제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박기범 기자